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단560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성하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피고 6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우원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G은 13,206,540원, 피고 H은 8,804,355원, 피고 K은 8,804,3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순번 제1, 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G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은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I은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은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K은 4/45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2. 3. 8. 접수 제7066호로 마친 소외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F는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2/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은 4/1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I은 4/1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은 4/1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K은 8/585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70. 10. 13. 접수 9896호로 마친 소외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영천시 N 임야 2정 8단 8무보(이하 ‘분할 전 N 임야’라 한다)로부터 분할된 부동산들이고, 별지 목록 순번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영천시 O 임야 1정 4단 4무보(이하 ‘분할 전 O 임야’라 하고, 위 분할 전 N 임야와 통틀어 ‘분할 전 각 임야’라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부터 분할된

부동산들이다.

나. 분할 전 각 임야는 모두 원고의 부(父) 망 P 명의로 사정된 임야들인데, 이에 관하여 1970. 10. 13. 망 P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M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2. 3. 8. 망 M의 장남인 망 L 명의로 2002.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P은 1952. 1. 5. 사망하였는데, 처 Q와 사이에 장남 망 M, 차남 망 R, 3남 S, 4남 원고가 있었고, 망 M은 2004. 5. 30. 사망하였으며, 망 L는 2019. 7. 1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G, H, I, J, K: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 C, D,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분할 전 각 임야는 망 P이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망 P이 1952. 1. 5. 사망하였으므로 장남인 망 M은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P의 재산을 전부 승계한 다음 그중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원고를 포함한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망 M은 분할 전 각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마치 망 P으로부터 이를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만들어 1970. 10. 1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은 별지 목록 순번 제1, 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망 P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망 M,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망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 G, H, I, J, K를 상대로 별지 목록 순번 제1, 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망 L

명의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 별지 목록 제6, 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피고 G, H, K을 상대로 그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나(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시행(1960. 1. 1.)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다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며, 위와 같은 관습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P이 1952. 1. 5.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호주상속인 망 M이 분할 전 각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망 P의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망 M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인데, 원고가 망 M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구체적인 재산 분배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망 P의 소유이던 분할 전 각 임야를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망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별지 목록 순번 제1, 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망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거나 피고 G, H, K이 수령한 별지 목록 제6,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분재청구권의 행사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원고가 분가한 1973. 2. 17.(갑 제12호증의5, 을 제2호증)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G, H, I, J, K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분재청구권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별지

목 록

1.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24246㎡
2.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3단6보
3.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7무29보
4.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5무9보
5.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3242㎡
6.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2545㎡
7.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8009㎡
8.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170㎡
9. 경상북도 영천시		임야 315㎡. 끝.

